



소상공인 여러분!  
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 
 신청하시고 근로자 1인당  
 월 5만원 추가 지원  
 받으세요!!!

#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- 경남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(10.9%)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「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」을 시행합니다.
-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, 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 1인당 18만원(정부 13, 경남 5), 5인 미만의 경우 1인당 20만원(정부 15, 경남 5)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신청대상** •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주

**지원내용** •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(6개월간 한시 지원)

**지원조건**

-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
-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
- ※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**지원제외**

-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,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- 휴·폐업 사업주, 특수관계인(대표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) 등

**신청방법**

- 신청기간 2019. 2. 1 ~ 6. 28.
- 접수처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구비서류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, 본인 통장 사본 등
- ※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(www.gyeongnam.go.kr)